

환편기 프레임에 끼어 사망

재해 개요

2018년 3월 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원단의 결점을 표시하기 위해 환편기 권취부의 방호울을 열고 들어가, Take up 장치 작동조작 중 가동버튼 오조작으로, Take up 장치와 환편기 프레임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재해임.

재해 관련 사진



< 관련 사진 >

재해 발생 원인

○ 위험점(끼임) 대한 방호조치 미흡

- Take up 장치 3면 방호울 개방 후, 접근상태에서 작동조작
- 운전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가동 중인 기계에 접근

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운전 시작 전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수립

[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(운전 시작 전 조치)]

방호울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열린 상태에서는 환편기가 가동될 수 없도록 조치하고, 환편기 운전방법에 대한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교육 및 관리

○ 정비, 청소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준수

[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]

- 원단의 결점을 표시하기 위해 미세운전을 통하여 Take up 장치를 적절한 위치로 회전시킨 후, 방호울을 개방하고 Take up 장치로 접근하여야 함.
- 방호울이 개방된 경우 환편기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방호울 연동장치가 작동되어야 함.